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두314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1. ○○○(영문명 1 생략)
	2. △△△(영문명 2 생략)
	3. □□□(영문명 3 생략)
	4. ◇◇◇코리아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김호준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3누6527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 ▽▽ 등 전 세계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 스마트기기용 부품을 공급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프런트엔드(RFFE) 및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부품의 일종인 중·고대역 PAMiD 부품, 와이파이/블루투스(Wi-Fi/BT) 콤보 부품, 독립형 위성측위시스템(GNSS) 부품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사업자이다.

나.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구매하는 절차는 개발 단계와 조달 단계로 구분되는데, 제품 개발 단계에서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제품에 적용할 부품 사양을 결정하고 부품을 공급할 협력사를 선정하며 협력사와 부품 가격을 협의 및 결정한다. 스마트기기 제조사인 ☆☆☆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 양산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특정 부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원고들을 특정 모델의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면 해당 모델의 거래종료 시까지 원고들로부터 해당 부품을 계속 공급받았다.

조달 단계에서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각 협력사별·부품별로 발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진행하고 부품 출고 및 대금 지급 등 거래를 진행한다. ☆☆☆의 경우 통상 2주에서 4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부품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 등 사업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부품 제조사는 스마트기기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원고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부품의 펌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은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의 기술지원 없이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

다. ☆☆☆은 스마트기기 제조에 필요한 OMH PAMiD, 와이파이/블루투스 콤보, 독립형 블루투스, 독립형 위성측위시스템 부품 등 이 사건 부품을 대부분 원고들로부터 구매해 왔는데, 원고들은 ☆☆☆이 2019. 9.경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제품명 생략) 중 일부에 원고들 경쟁사인 ▽▽의 OMH PAMiD 부품을 채택하자 ☆☆☆와의 스마트기기용 위성측위시스템 및 커넥티비티 부품 독점 거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0. 2.경부터 ☆☆☆의 부품 구매주문에 대한 승인 중단 및 선적, 기술지원, 생산 중단을 통해 ☆☆☆의 스마트기기 생산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하였고, 이에 ☆☆☆은 2020. 3. 원고들과 이 사건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장기계약에는 ☆☆☆이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23. 10. 6. 원고들이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원고들이 ☆☆☆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을 위반하였다

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정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는 제6호 라목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 제공'을 '가목 내지 다목(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부품은 ☆☆☆이 생산하는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품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 또한

☆☆☆이 이 사건 부품을 대부분 원고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이 사건 장기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던 점, ② ☆☆☆은 원고들이 공급하는 이 사건 부품의 탑재를 전제로 스마트기기 설계, 생산라인 배치, 인증 취득 등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생산하는 이 사건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환비용도 막대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스마트기기의 판매주기 및 대체 부품으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 등 스마트기기 생산·판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 입장에서 대체 부품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부품 거래중단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원고들의 장기계약 체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들의 ☆☆☆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

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장기계약이 정한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으로 인해 ☆☆☆의 부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고 그 이행과정에서 다른 부품업체의 부품을 채택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취소·축소되거나 다음 해에 필요한 원고들 부품을 미리 구매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장기계약의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기계약이 정한 최소구매 약정에는 ☆☆☆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장기계약은 위와 같은 ☆☆☆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이익을 ☆☆☆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에 대해 가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에 이 사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하였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장기계약이 공급중단행위라는 부당한 수단에 의해 ☆☆☆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장기계약의 내용이 ☆☆☆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 원고들의 경쟁 부품업체 부품을 채택하는 것을 막고 원고들 부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급하려는 의도·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장기계약으로 ☆☆☆의 경쟁 부품업체 부품 채택이 제한됨에 따라 ☆☆☆에 대한 해당 부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쟁 부품업체들의 거

래기회가 제한된 점, 원고들이 ☆☆☆를 위해 특화된 투자를 하였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장기계약의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이 ☆☆☆의 무선 주파수 프런트엔드(RFFE) 및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부품 구매에 적용되었고 ☆☆☆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을 실제로 구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따

른 매출액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